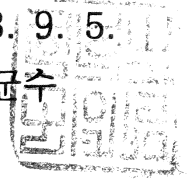


「호우 및 태풍 피해」 지원 관련 군세 감면 동의(안)

의안 번호	236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23. 07. 09.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,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의거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감면대상자

- 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
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○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주민세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[개인분,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]를 면제.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·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.

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.

3. 감면 추계액 : 대상자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통보

4. 기타사항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(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)
- (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나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: 여

다. 예산수반사항: 해당 없음

라. 관련공문

- (1) 호우 피해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: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2605(2023. 7. 17.), 지방세특례제도과-1920(2023. 7. 20.)
- (2)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: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-9597(2023. 7. 20.)

참고 1

관련 공문

- ※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[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2605(2023. 7. 17.)]
- ※ 지방세입 지원방안 통보[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-1920(2023. 7. 20.)]
- ※ 지방세 감면기준 통보 [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-9597(2023. 7. 20.)]

「호우 피해」 “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”에 따른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, 범정부 차원에서
쏠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

1 추진 배경

- ' 23. 7. 9.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*가
“특별재난지역” 으로 우선 선포(' 23.7.19.)

<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>

구분	시군구 단위	읍면동 단위
세종	세종시	-
충북	청주시·괴산군	-
충남	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	-
전북	익산시	김제시 죽산면
경북	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	-

- 해당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,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유가족에
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

⇒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

②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

① 지원 근거 및 방식

- (법규정)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§4④)
- (지원방식) **쏠 지방자치단체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추진**
※ '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
- 직권 감면을 원칙*으로 하되,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*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

② 감면 대상자

-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 라 함)
-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, 이하 “유가족” 이라 함)

③ 감면 내용

- 사망자·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¹⁾, 유가족의 상속 취득세²⁾
 - ┌ 1)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(2023.1.1.~12.31.)의 지방세
 - └ 2)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

세 목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① 주민세 개인분*	• 사망자·유가족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§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특·광역시, 시·군
① 자동차세 소유분	• 사망자·유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특·광역시, 시·군
재산세	• 사망자·유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	시·군·구
② 지역자원시설세*	• 사망자·유가족 * 소방분限	7월, 9월	특·광역시, 도
③ 취득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특·광역시, 도

- ①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,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
⇒ 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(§81①1가목), 자동차세 소유분, 재산세
- ②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⇒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- 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⇒ 취득세

3 협조사항

< 업무 처리 절차 >



- (개발원) 사망자·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既부과·부과예정 납세지 관할 지자체*에 대상자 내역 통보
 - * (정기분)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·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 (취득세)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
 - (지자체)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'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*, 유가족에 대한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 지원될 수 있도록
 - *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既부과된 지방세는 감액·환급 조치
- ⇒ 신속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
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**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**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- 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

□ 지방세법

제80조(과세표준)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.

제81조(세율)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기본세율
 - 가.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: 5만원
 - 나.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
 - 1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: 5만원
 - 2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: 10만원
 - 3)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: 20만원
 - 4) 그 밖의 법인: 5만원 총액으로 한다.

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

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.

1. 토지 및 건축물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
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

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제111조(세율)

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1. 토지

나. 별도합산과세대상

과세표준	세율
2억원이하	1,000분의 2
2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
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

다. 분리과세대상

- 1)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0.7
- 2)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- 3) 그 밖의 토지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

2. 건축물

가.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다. 그 밖의 건축물: 과세표준의 1천분의 2.5

3. 주택

가.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: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

나. 그 밖의 주택

과세표준	세율
6천만원이하	1,000분의 1
6천만원 초과~1억5천만원 이하	6만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.5
1억5천만원 초과~3억원 이하	19만5천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.5
3억원 초과	57만원+3억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4